

[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- 호]

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(안)

제조혁신을 통한 중소·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『2024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15일

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중소·중견기업의 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, 로봇 및 공정자동화, 스마트공장 수준확인, 데이터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

<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현황 >

(단위 : 억원)

구분	사업명		지원 과제수	지원 기간	지원 한도	지원금 비중	사업 공고	신청 접수	평가 선정
제조혁신 구축	선도형 제조혁신 (스마트공장)	정부일반형	335	9개월	2	50%	'23.12	'24.1~2	'24.2~6
		정부일반형 (지역특화프로젝트)	165	9개월	2	50%	'24.3	'24.3~4	'24.4~5
		자율형공장(2년)	20	2년	6	50%	'23.12	'24.1~2	'24.2~6
		대중소상생형	200	9개월	1.2	30%	'23.12	'24.1~	'24.2~
		부처협업형	35	9개월	2	50%	'23.12	'24.1~2	'24.2~6
		탄소중립형	15	9개월	2	50%	'23.12	'24.3~4	'24.4~6
		디지털협업공장	6컨소	12개월	10	50%	'24.2	'24.2~3	'24.3~4
	제조혁신 자동화	제조로봇활용	100	8개월	2.5	50%	'23.12	'24.1~2	'24.2~4
		제조기반기업	75	8개월	0.9	50%	'23.12	'24.1~2	'24.2~4
	스마트공장 수준확인		1,500	-	0.01	100%	'23.12	'24.1~	'24.1~
제조혁신 인프라 조성	클라우드형 종합솔루션		1컨소	12개월	8.3	50%	'23.12	'24.1~2	'24.2~3
	공급기업 역량진단		300	-	0.01	80~100%	'23.12	수시	수시
	스마트공장 AS지원		350	6개월	0.2	50%	'23.12	수시	수시
데이터 인프라 구축	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가공기업 Pool 모집		미정	-	-	-	'23.12	'24.1	'24.2
	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		25	4개월	0.5	80%	'24.2	'24.3	'24.6
	제조데이터 상품 구매지원		25	4개월	0.1	80~100%	'24.2	수시	'24.6~

* 지원기간 · 지원한도 · 정부지원금 비중은 '최대'를 의미

※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 통합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공통사항

- 신청자격 :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- 신청방법 : 온라인 (인터넷)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

☞ 사업계획서 신청 :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사업관리 → 과제신청 → 사업계획서 내용입력

※ 일부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

- 사업별 세부내용 공고
 -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,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(www.mss.go.kr),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에 공고
- 정부지원금 : 총 사업비의 30~100% 이내
- ※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(현금부담)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
- 지원제외 :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
☞ 부적격 사항

- ▷ 휴·폐업중인 기업
- 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
- 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- ▷ 개별 사업공고에서 '신청제한' 또는 '지원제외'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

< 유의사항 >

-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 통합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일정 변경 및 추가 안내는 관련 홈페이지* 등에 공지
- *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(www.mss.go.kr),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등
- 사업별 상세내용은 추후 사업별 세부내용 공고문('23.12월 이후)을 통해 반드시 확인 필요
- ※ 신청자격, 지원기준, 평가방법, 지원제외 등이 사업별로 다를 수 있음

2. 사업별 지원계획

①-1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

☐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기업 현실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지원
- (지원대상)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
☐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

- 지원내용
 - (SW) 제품설계·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
 - (HW) 스마트공장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
- 지원과제 : 335개
- 지원조건

구 분	지원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지원금 비중
고도화 (동일수준)	최대 6개월, 0.5억원	50% 이내
고도화	최대 9개월, 2억원	50% 이내

* '동일수준'은 수준향상 없이(중간1→중간1, 중간2→중간2) 재신청하는 경우

☐ 유의사항

- 목표수준 초과 달성기업(기초사업 완료 후 스마트공장 수준이 중간1 이상으로 측정된 기업)의 경우 1회에 한해 2억원까지 지원
-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(6개월) 포함하여 체결

①-2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(지역특화프로젝트, 레전드 50+)

□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지역특화 프로젝트 연계를 통한 별도 지원트랙 추진을 통해 지역 주도 역량 강화 및 지역 제조기업 신속 지원 추진

【 지역특화 프로젝트 개요 】

- ▶ (프로젝트 기간) '24년~'26년(3개년)
- ▶ (프로젝트 기획)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TP·중진공, 대학, 연구기관 등 지역혁신기관과 공동기획
- ▶ (지원 규모) 프로젝트당 중기부 기준 연간 100~300억원 내외(차등지원)
- ▶ (지원 내용) (핵심지원)컨설팅, 창업·성장, 제조혁신(스마트공장), 정책자금 / (전용지원)사업화
- ▶ (주요 절차) 프로젝트기획(17개 지자체) → 프로젝트선정(중기부) → 지원기업선정(통합공고 후 합동평가)
→ 프로젝트 추진(17개 지자체) → 프로젝트 연계지원(지역혁신기관)

- (지원대상) 스마트공장 고도화가 필요한 중소제조기업 중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

□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: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과 동일

○ 지원내용

- (SW) 제품설계·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
- (HW) 스마트공장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

○ 지원과제 : 165개

○ 지원조건

구 분	지원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지원금 비중
고도화 (동일수준)	최대 6개월, 0.5억원	50% 이내
고도화	최대 9개월, 2억원	50% 이내

* '동일수준'은 수준향상 없이(중간1→중간1, 중간2→중간2) 재신청하는 경우

※ 추진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동공고문('24.3월 예정)을 참조

② 자율형공장

□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AI·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, 분석·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
- (지원대상)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 중 '중간1'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또는 '중간1' 이상 수준확인기업

□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

- 지원내용
 - (진단·기획) 기업별 공정분석,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구축기획 등
 - (구축) AI·디지털트윈을 적용, 가상환경 기반의 자율형공장 구축 등
- 지원과제 : 20개
- 지원조건 : 총 사업비의 50%, 연 3억원, 최대 2년

□ 기타사항

- 도입기업은 1차 평가 후 기획기관 및 공급기업* 매칭을 통해 컨소시엄으로 최종 선정평가 대응
 - * (기획기관) 공정분석, 맞춤형 전략수립 및 컨설팅 등 기획역량 보유기관·기업
 - (공급기업) 데이터 연계 기반 AI·디지털트윈 적용 자율제어 구축역량 보유기업
- 사업공고시 기획기관 모집을 병행하고, 전략수립 및 공급기업 매칭 등 도입기업을 지원

③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

□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
- (지원대상)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
□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

- (주관기관) 중소·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·중견기업·공공기관·민간기관 (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)
 - * 주관기관의 현물출자 인정(주관기관 출연금의 20% 이내)
- (협업기관)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역량을 소유한 공공·민간기관

□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

- 지원내용
 - 주관기관이 중소·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, 정부가 구축 비용의 30% 이내 지원
 - 주관기관이 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며,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·중견기업 모집·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
 - *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% 이내 협업기관 운영비로 책정 가능

- 지원과제 : 200개

- 지원조건

구 분	지원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지원금 비중
고도화 (동일수준)	최대 6개월, 0.3억원	30% 이내
고도화	최대 9개월, 1.2억원	50% 이내

* '동일수준'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/ 협약기간은 구축 완료 후 집중AS기간(6개월) 포함

④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

□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, 산업안전 등 현안해결과 연계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
- (지원대상)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중소·중견 제조기업

□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

- 지원내용
 - (중기부)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
 - (해당부처) R&D · 인증·판로·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
- 지원과제 : 35개
- 지원조건

구 분	지원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지원금 비중
고도화(동일수준)	최대 6개월, 0.5억원	50% 이내
고도화	최대 9개월, 2억원	50% 이내

* '동일수준'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/ 협약기간은 구축 완료 후 집중AS기간(6개월) 포함

□ 기타사항

- 협업부처 추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 운영기관 선정
 - * 운영기관은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% 이내를 운영비로 책정 가능
-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, R&D · 인증·판로·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

⑤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

□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중립 대응력 강화를 위해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
- (지원대상) 국내 중소·중견 기업*
 - * 뿌리기술(14개 업종), 고탄소 배출업종

□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

- 지원내용
 - 에너지 진단·설계 컨설팅,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(FEMS 솔루션), 고효율 설비 등을 패키지 지원
- 지원과제 : 15개 내외
- 지원조건

구 분	지원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지원금 비중
고도화(동일수준)	최대 6개월, 0.5억원	50% 이내
고도화	최대 9개월, 2억원	50% 이내

* '동일수준'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/ 협약기간은 구축 완료 후 집중AS기간(6개월) 포함

□ 유의사항

- FEMS(공장 에너지관리 시스템) 솔루션만 지원하므로, MES(제조실행 시스템), SCM(공급망관리시스템) 등 여타 솔루션 구축은 불가

⑥ 디지털협업공장

□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대표기업 중심으로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, 공장·기업 등 다자간 데이터 기반 상호연결된 컨소시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
 - * (예시1) 소재·부품 → 모듈 → 완제품 등을 분담하여 생산하는 제조기업 간 연계
 - * (예시2) 연구개발 → 설계 → 구매 → 제조 → 유통 → 판매 → 서비스(A/S) 등 제조 전반의 기업 간 연계
- (지원대상) 중소·중견 제조기업(5개 이상)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

□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

- 지원내용
 - (공동·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) 제품 개발·생산, 유통·물류 관리 등의 컨소시엄간 연계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지원
 - (개별 스마트공장 구축) 생산공정 개선, 공동·협업 시스템 연결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지원
- 지원과제 : 6개 컨소시엄(30개 기업)
- 지원조건

구 분	지원기간 및 지원한도		정부지원금 비중
개별 스마트공장 + 공동·협업 스마트시스템	고도화(동일수준)	최대 12개월, 0.5억원	50% 이내
	고도화	최대 12개월, 2억원	50% 이내

* '동일수준'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/ 협약기간은 구축 완료 후 집중AS기간(6개월) 포함

□ 기타사항

- 데이터 기반 협업을 위해 지식재산권(제조데이터 등) 및 영업비밀 등 참여기업 간 권리의무와 역할분담 등을 규정한 “상호협력 계약” 체결 필요

⑦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

□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 현장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지원
- (지원대상)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
 - (도입기업) 로봇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관련 기업
 - (공급기업) 로봇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 보유 기업(로봇 SI기업)

□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

- 지원내용 : 로봇 도입, 공정설계 컨설팅, 안전 검사 등 패키지 지원
- 지원과제 : 100개
- 지원조건

구 분	지원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지원금 비중
로봇 도입	최대 8개월, 2.5억원	50% 이내

⑧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

□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주조, 표면처리, 정밀가공 등 제조기반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수작업, 고노동부하공정 등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
- (지원대상) 공정자동화 구축이 필요한 국내 중소 제조기반기업
 - * 주조, 금형, 용접 등 제조기반기업으로 업종코드(※개별 사업공고 참고)를 보유한 중소기업

□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

- 지원내용 : 인력 의존도가 높은 공정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구축 지원
 - * (지원제외) 단순 범용 공정장비·설비 구입·교체는 지원대상 제외
- 지원과제 : 75개
- 지원조건

구 분	지원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지원금 비중
공정자동화 구축	최대 8개월, 9천만원	50% 이내

⑨ 스마트공장 수준확인

☐ 사업개요

- 중소·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

☐ 지원내용

① 확인기관 및 교육·심의기관 (‘23.12월 별도 공모 후 모집)

○ 대상기관

- (확인기관) 수준확인 사업 전반(수요 발굴·홍보, 수준확인 신청·접수, 수준확인 실시, 사후관리 등)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
- (교육·심의기관) 수준확인 심사원 교육, 교육 프로그램 개발, 수준확인 심사 결과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

○ 지원내용

- (확인기관) 참여기업 모집·선정·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·운영비 지원
- (교육·심의기관) 수준확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통합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·운영비 지원

② 수준확인 참여기업 (확인기관, 교육·심의기관 선정 후 별도 공지)

○ 지원대상

-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(정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미참여)
-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
-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업

○ 지원과제 : 1,500개

○ 지원내용 : 수준확인서 및 진단보고서 제공 (수준확인 비용 전액 지원)

⑩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

□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업종별 스마트화에 요구되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기능 연계·추가·개선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·패키지 형태로 개발을 지원
- (지원대상)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역량을 갖춘 컨소시엄
 - 솔루션 시범적용을 위한 제조기업(도입기업), 협력기관 참여 가능
 - 3개 이상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경우, 중소공급기업 참여 필수

□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

- 지원내용
 - 업종별 대표 공정 또는 주요 생산품 제조현장의 스마트화·디지털화에 적용 가능한 MES(제조관리시스템), ERP(전사적 자원관리), PLM(제품수명주기관리), AI(인공지능 솔루션) 등의 주요 기능·솔루션을 하나의 패키지로 공급 가능한 솔루션 개발 지원

※ Public cloud 환경에서 SaaS(서비스형 소프트웨어)형태로 솔루션 공급이 가능해야 함

- 지원과제 : 1개 컨소시엄
- 지원조건 : 최대 50%지원, 8.3억원

※ 공급기업의 기존 개발인력, 보유 소스코드, 개발도구 활용, 개발환경 제공을 위하여 민간부담금의 최대 20%까지 현물 인정

□ 유의사항

- 솔루션 개발 완료 후 솔루션 목표업종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증 추진 및 완성된 솔루션에 대한 사업화 필수

⑪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

□ 사업개요

- 공급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정보를 제공하여 공급기업의 자발적 역량강화 및 도입기업의 양질의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

□ 지원규모 : 3억원, 300개사

□ 지원대상 : 중소·중견기업* 중 스마트공장 공급기업**

* 국내 중소·중견 공급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

** 공장 자동화 설비, 정보시스템, 솔루션 개발·운용 등 스마트제조 공정 공급기술을 갖춘 기업

□ 지원내용

- (자가 역량진단) 공급기업이 자사의 역량을 스스로 진단하고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가 역량진단 기능 제공
- (전문 역량진단) 자사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원하는 기업에는 전문 진단원을 배정하여 기본 진단과 심화 진단 수행
 - (기본 역량진단) 개발된 역량진단 모델을 기반으로 전문 진단원이 진단지표에 따라 진단 후 진단결과를 기업에 제공
 - (심화 역량진단) 단계별 기본 진단 후 분야별 세부 진단 및 개선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에 제공

□ 지원조건

- (기본 역량진단) 진단비용 100% 전액 지원(기업당 최대 80만원)
- (심화 역량진단) 진단비용 80% 지원(기업당 최대 152만원)

대상	총 진단금	정부 지원금(80%)	기업 부담금(20%)
기본 진단 완료 후 추가 컨설팅 희망 기업	190만원 (VAT포함)	152만원	38만원

⑫ 스마트공장 AS지원

□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교체,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
- (지원대상)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(수준확인 기업 포함) 및 '23년 이후 지자체 지원을 통해 구축한 스마트공장

□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

- 지원내용
 -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/W(부품 등) 및 S/W(솔루션 등)의 고장·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지원
 -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하는 생산품목 변경, 공정개선, 생산효율성 개선,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/W 및 S/W 업그레이드 지원
 - 역량강화 교육, 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법 전수, 활용 관리, 지속적 H/W, S/W 개선 등의 AS를 주기적·장기간(6개월 이내) 지원
- 지원과제 : 350개
- 지원조건

지원유형	정부지원금	지원기간	지원비율
AS지원 (수시)	최대 20백만원	최대 6개월	50% 이내

□ 스마트공장 AS지원 유형 예시

구 분	현장애로(예시)	AS지원 내용
부품교체	· 운반 로봇 등 시스템의 잦은 고장	· H/W 교체비용 지원
품목변경	· 생산제품 변경에 따른 설비운영 애로	· S/W 및 H/W 업그레이드 지원
공정개선	· 생산라인 배치 개선에 따른 A/S 수요	
유지관리	· 품목추가, 담당자 퇴사 등에 따른 운영 애로	· 품목별 DATA 수집 연계 및 교육

⑬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가공기업 Pool 모집

☐ 사업개요

- 제조데이터 가공 능력(인력, 기술 등)을 보유한 가공기업 pool을 확보하고, 제조기업 등에 제공하여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시 활용
- '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사업' 과제 선정 시, 데이터 보유기업에 매칭되어 데이터 가공, 활용 등의 업무 수행

☐ 선정규모 : 미정(절대평가로 요건 적합 기업을 Pool에 등록)

☐ 지원대상

- 제조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, 인력 등 데이터 가공 서비스 지원 체계를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

☐ 수행업무

- 중소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AI·빅데이터 분석용 제조데이터 가공 및 품질검증 등 상품화 지원
- (제조데이터 가공 및 상품 제작) 제조데이터의 전처리, AI 학습모델 구축 등 제조데이터 상품 제작을 위한 가공 수행
- (상품등록 지원) 가공지원을 통해 산출된 제조데이터 상품은 제조데이터 거래소에 필수적으로 등록(최소 1년 이상)
- (제조데이터 활용지원) 보유 제조데이터를 활용한 상품화 전략 등 제조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데이터 활용 개선방안 제언

⑭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

☐ 사업개요

- 제조데이터 상품화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 현장에서 수집·저장된 제조데이터의 품질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 도모

☐ 지원규모 : 12.5억원 (25개 기업 내외)

☐ 지원대상 : 제조데이터를 수집 중인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
☐ 지원내용

- 중소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AI·빅데이터 분석용 제조데이터 가공 및 품질검증 등을 통한 제조데이터 상품화 지원
 - (가공 지원) 제조데이터의 개념화, 분석 및 분류, 전처리 등 빅데이터·AI 기반 제조데이터 가공 서비스 제공
 - (품질 검증지원) 제조데이터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 검사 및 검증 프로세스 지원
 - (상품 등록지원) 산출된 제조데이터 상품의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가격산정 및 거래시스템 등록 지원

☐ 지원조건 : 최대 4개월, 0.5억원(총사업비의 80% 이내) 지원

구분	지원기간(최대)	지원금액(최대)	정부지원금 비중	기업부담금 비중
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	4개월	0.5억원	80% 이내	20% 이상 (기업부담금의 10% 이상 현금부담)

⑮ 제조데이터 상품 구매지원

☐ 사업개요

- 제조데이터 구매 지원을 통해 제조데이터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 제조데이터·AI 활용 활성화 촉진

☐ 지원규모 : 2.5억원(25개사 내외)

☐ 지원대상 : 국내 중소·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

- (중소·중견기업) 제조데이터를 구매하여 제조현장 개선 또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·중견기업
- (비영리기관) 제조데이터를 구매하여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공공·연구기관, 대학 연구팀, 협단체 등 비영리 법인

☐ 지원내용

- AI 제조플랫폼(KAMP) 내 제조데이터 거래소에 등록된 제조데이터 상품의 구매비용 지원
- 제조데이터 거래소에 미등록된 상품 구매의 경우, 구매지원사업 과제 선정평가 전까지 제조데이터 거래소에 상품 등록 필요

☐ 지원조건 : 최대 1천만원(총사업비의 80% 이내) 지원

구분	지원기간*(최대)	지원금액(최대)	정부지원금 비중**	기업부담금 비중
중소·중견기업	4개월	1천만원	80% 이내	20% 이상
비영리기관			100% 이내	-

* 지원기간은 협약체결 후 제조데이터 구매 및 활용까지 수행하는 기간

** 비영리기관은 기업부담금 없이 정부지원금 100% 이내로 지원

3. 사업별 문의처

□ 사업별 문의처

구분	사업명		중소벤처기업부	전문(운영) 기관	연락처
제조혁신 구축	선도형 제조혁신	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(지역특화프로젝트 포함)	제조혁신과	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	지역별문의처참조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
		자율형공장			044-300-0960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
		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			044-300-0958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
		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		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	044-300-0959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
		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		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	055-751-9588
		디지털협업공장		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	044-300-0953~4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
	제조혁신 자동화	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		한국로봇 산업진흥원	053-210-9622~7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
		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		한국생산 기술연구원 (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)	02-2183-1624
	스마트공장 수준확인			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	044-300-0956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
	제조혁신 인프라 조성	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		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	044-300-0972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
공급기업 역량진단		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		044-300-0972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	
스마트공장 AS지원		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		044-300-0981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	
데이터 인프라 구축	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가공기업 Pool 모집	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		044-300-0941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	
	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	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		044-300-0941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	
	제조데이터 구매지원	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		044-300-0941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	

※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

-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: <https://smart-factory.kr>
-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: <http://www.mss.go.kr>
-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: “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” / http://pf.kakao.com/_Ilfqd
-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: <https://pms.kpic.re.kr>

□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(제조혁신센터, TP)

지역	기관명	연락처
서울	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2-944-6032/6036
부산	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51-974-9154
대구	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53-602-1864/1860
경북	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53-819-3056~8
포항	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54-223-2242/2244
광주	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62-602-7214/7218
전남	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61-729-2581~4
제주	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64-720-3039
경기	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31-500-3100
경기북부	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31-539-5145,5147
인천	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32-260-0621~4
대전	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42-930-4351~2
충남	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41-589-0705
세종	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44-850-2151/2154
울산	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52-219-8646/8910
강원	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33-248-5682
충북	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43-270-2813
전북	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63-832-6052,3
경남	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	1811-8297